

산업피해구제제도 ②

자료제공 •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

상계관세제도(Countervailing Duty System : CVD)

가. 제도의 개요

□ 정의

-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지연될 때, 보조금지급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
-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약을 신설

□ 성립요건

- 특정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(특정성)
- 보조금을 지급받은 제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

□ 보조금(subsidy)의 정의 : WTO보조금 · 상계관세조치협정

-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자금이전(무상지원, 대출, 지분참여), 잠재적인 자금이전 또는 채무부담(대출보증 등)
- 정부세입의 포기(세액공제 등)
- 정부에 의한 일반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와 용역의 제공 또는 재화의 구매 등

□ 조사신청

-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인(국내생산자 관련 법인 · 단체)
- 당해산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장관

□ 상계관세 부과절차 및 방법 등

- 덤핑방지관세제도의 제규정을 준용

- 그러나 상계관세 부과는 수출국 산업정책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보다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음

나. 보조금의 종류 및 상계관세 적용대상 보조금

□ 보조금의 종류

- 금지보조금(prohibited subsidies)

-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 또는 수입대체성과에 대해 공여되는 보조금

- 상계가능보조금(actionable subsidies)

-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(specificity)이 있는 보조금

- * 특정성 : 보조금을 일부 기업 또는 산업에만 명백히 제한하여 지급

- 허용보조금(non-actionable subsidies)

-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

-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인 경우에도 다음 보조금은 허용

- ① 연구개발보조금 : 산업적 연구인 경우 소요비용인 75%이내

- 경쟁전 개발활동인 경우 50% 이내로 제한

- ② 지역개발보조금 : 지역개발의 일반적 계획에 의하여 낙후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혜지역에 대해서는 특정적이지 않게 공여되는 보조금

- ③ 환경보조금 :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설을 적응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보조금(비반복적 일회적조치, 적응비용의 20%이내 지원 등에 한정)

□ 상계관세제도의 적용대상

- 수출국의 금지보조금 또는 상계가능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동종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

- 금지보조금이 공여된 경우, 수입국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지 않고도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 가능

긴급수입제한제도 (Safeguard system)

□ 정의

- 외국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(serious injury)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제한, 관세율인상 등 구제조치를 하는 제도

- GATT 제11조는 관세나 과징금이외의 수출입허가 또는 쿼터제를 금지하면서 제19조에서 일정한 조건하에서 면책조항(escape clause)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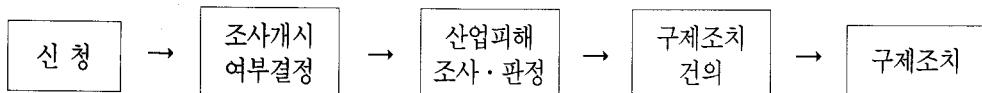
□ 성립요건

- 특정물품의 수입증가
-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발생 및 피해발생 우려
-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

□ 신청자격

- 국내동종산업의 이해관계인
 - 당해 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량 또는 업체수의 비중이 20% 이상인 생산자(농림수산업인 경우 5인 이상의 생산자)
 - 당해 국내산업관련 협회·조합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
-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위원회(직권조사)

□ 조사·판정절차



□ 구제조치의 유형

- 수입수량의 제한(쿼터설정), 관세율조정, 기술·생산성향상 등 지원 등
- 조치기간은 4년이내 (8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□ 수출국에 대한 협의 및 보상

- 긴급수입제한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이므로 신중한 접근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(WTO협정)
 - 조치는 심각한 산업피해를 방지·치유하거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,
 - 수입국은 해당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(타 수입물품의 관세인하 등)을 해

줄 것을 권고

- 협의결과를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해당 수출국은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

□ 긴급수입제한제도와 여타 구제제도의 비교

-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제도

- 덤핑수출·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(material injury)를 요건으로 함

- 긴급수입제한 제도

- 공정한 무역행위에 따른 수입증가 및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(serious injury)를 요건으로 함

* 따라서 긴급수입제한 제도는 ① 자유무역체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조치 제도이며, ② 여타 산업피해구제제에 비해 그 적용 까다롭다는 특징을 가짐

<유제품 세이프가드 조사·판정 CASE>

□ 조사신청('96. 5. 2)

- 신청인 : 축협중앙회

- 신청품목

- 천연밀크조성분 함유제품(HSK0404.90.0000)

- 밀크와 크림 등의 조제식료품(HSK1901.90.2000)

□ 조사개시 결정('96. 5. 28)

- 조사대상품목 : 유제품(HSK0404.90.0000, 1901.90.2000)

- 조사대상기간 : '93. 1월 ~ 판정시점까지 중 정보이용이 가능한 기간

□ 판정('96. 10. 23)

- 판정요지 : 산업피해 긍정판정

- 구제조치 내용

- 기간 : '97. 3 ~ 2001. 2(4년간)

- 수입수량제한(쿼터제)

· 1차년도 20,521톤(매년 5.7%씩 증가)

□ 유제품 SG 조치 효과

- 국산품 시장점유율은 유제품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인 '96의 85.5%에서 '97년 88.6%, '98년 90.7%로 증가추세이며 '99년에는 90.3%로 현상유지
- 경상이익은 구제조치 이전인 '96년의 △ 4,068백만원에서 '99년에는 3,815백만원으로 대폭 개선되었음
 - '97년에 경상이익에서 손실이 증가한 것은 구제조치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'98년부터 나타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
- 재고는 구제조치 이전인 '96년의 15천톤에서 '97년 7천톤으로 감소, '98년에는 IMF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재고가 약간 증가 후 '99년에는 4천톤으로 안정

〈시장점유율·경상 이익 및 재고 동향〉

| 구 분 | '96 | '97 | '98 | '99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국산원유 시장점유율(%) | 85.5 | 88.6 | 90.7 | 90.3 |
| 경상이익(백만원) | △ 4,068 | △ 7,145 | 376 | 3815 |
| 분유제고(천톤) | 15 | 7 | 10 | 4 |

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현안 이슈

가. 반덤핑제도와 경쟁정책의 조화문제

□ 문제대두 배경

- 반덤핑제도의 운용국가 증가 및 보호주의적 사용으로 오용 및 남용 가능성 증가
- 이에 따라 공정경쟁 확보라는 반덤핑제도의 원취지와는 달리 경쟁제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대두
 - 심지어는 반덤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일부 대두

□ 각국동향

- 미국·EU 등 반덤핑제도의 전통적 이용국들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 반덤핑제도를 다루는데 반대 내지는 소극적 입장
- 일본·캐나다 등 수출지향적 국가들은 경쟁정책적 관점에서의 반덤핑제도 개선필요성을 주장

□ 향후 전망

- 반덤핑제도는 대외적으로는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나, 대내적으로는 WTO체제하의 거의 유일한 국내산업보호제도라는 양면성을 가짐
- 따라서 이러한 양면적 필요성을 조화하는 선에서, 반덤핑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제협상이 전개될 전망임

나. 반덤핑조치 결정시 공익(Pulilic Interest)의 고려여부

□ 문제대두 배경

- 국제적으로 세이프가드조치 결정시에는 산업피해외에 공익을 고려하나, 반덤핑조치시에는 일반적으로 산업피해만을 고려하는 추세
- EU(Community Interest) · 캐나다(Pulilic Interest) 등 일부국이 공익을 고려하고 있으나 소극적으로 고려
- 이에 따라 반덤핑 조치시 연관산업 · 최종소비자 등 경제전체의 후생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비판 대두
- 독과점 강화효과, 경쟁제한효과, 이노베이션 저해효과 등
- ※ 우리나라의 경우 반덤핑 조치시 『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』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(관세법 제10조 제1항), 구체적인 기준 미비로 미시행

□ 일반적 동향

-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점증하고 있는 추세
그러나 반영할 공익의 범위 · 종류, 공익의 객관적 측정지표 · 방법 등 측면의 어려움으로 공익제도의 채택을 주저하는 추세
- 공익고려가 체계성 없이 이루어질 경우 반덤핑 결정의 공정성 ·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

□ 향후 전망

- 공익고려논의의 증대와 더불어 WTO협정 및 각국 법률차원에서 공익고려제도가 점진 도입될 전망

다. 우회덤핑(Circumvention) 방지제도의 도입 여부

□ 문제대두 배경

- 우회덤핑은 반덤핑조치 대상물품의 수출자가 반덤핑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우회

덤핑수출행위를 의미하며,

- 부품 수출후 수입국에서 단순조립, 제3국에서 생산·조립후 수출, 물품의 사소한 변경, 조치이후의 신상품 개발 등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.
- 이 경우 반덤핑조치가 무력화되므로, 이에 대한 방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 대두

□ 각국 동향

- 미국·EU 등 수입국은 우회덤핑방지조치가 반덤핑제도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, 우회덤핑방지 국제규범의 제정을 요구
- 일본·개도국 등 수출국은 일반적으로 우회덤핑방지 국제규범의 제정에 반대 내지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면서, 미국·EU가 국내법으로 우회덤핑방지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AD협정 위반이라고 주장

□ 향후 전망

- 우회덤핑방지규정 제정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차이가 커 협상의 진전에 불투명

라.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(ESG)규범의 도입

□ 문제대두 배경

- UR협상에서 WTO체제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도 개방하기로 하였으며
- 이에 따라 개도국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서비스분야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,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함

□ 각국의 동향

- 미국·EU·일본 등은 서비스 양허구조가 positive system이며 협정상의 약속도 약속 발효일로부터 3년 경과후 수정·철회가 가능하므로 ESG도입에 소극적
- 태국 등 개도국은 양허를 수정만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피해구제에 불충분하므로, 서비스 산업의 추가 개방을 위해서는 ESG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입장

□ 향후전망

- 협상은 선진국·개도국간의 기본적 시각차이로 인해 기한(99. 6월말)내 타결은 불가능할 전망
-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우리의 경우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ESG의 조기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